

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-

# 제 안 설 명 서

2022. 11.



최 홍 린 의원

# 제 안 설 명 서

제안자: 최홍린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## 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, 어린이 안전에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##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, 구청장의 책무, 시행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
-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,
-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사항, 신고 및 협조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##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

-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2년 11월 4일부터 2022년 11월 15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 예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
##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-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, 어린이 안전에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, 어린이가 보다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제안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## 감사합니다.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

## 【최홍린 의원 대표발의】

의안 번호	00922055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일자: 2022. 11. 4.

발의자: 최홍린, 박종길, 고명우, 서보영,  
이선주, 김장관, 도하석, 이영빈

### 1. 제정이유

-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, 어린이 안전에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(안 제1조)
- 나. 구청장 등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 .
- 라.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등에 관한 사항  
(안 제5조 ~ 안 제7조)
- 마.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바. 신고 및 협조의무에 관한 사항(안 제9조 및 제11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제정조례안: 붙임
- 나. 관계법령 : 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제4조, 제7조, 제8조
- 다. 비용추계: 비대상

##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에 따른다.

**제3조(구청장 등의 책무)**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보호자는 어린이안전에 관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,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
④ 대구광역시 달서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시행계획 수립 등)**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대구광역시 달서구 어린이안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

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5조(실태조사 등)** ①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, 위험성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.

**제6조(현장조사)** 구청장은 어린이안전과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이용시설을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·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**제7조(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)**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.

**제8조(어린이안전교육)** ① 구청장은 어린이이용시설의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.

1. 어린이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·보급을 통한 교육

2. 어린이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

3.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

③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, 구청장은 이를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신고 및 협조의무 등)** 누구든지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·식품·시설·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고, 관계 공무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관계 공무원은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홍보)** 구청장은 어린이안전관리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.

**제11조(협력체계 구축)**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내 교육지원청, 영·유아보육시설, 전문기관, 경찰서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**제12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계법령

## □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어린이”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.

2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, 후견인,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·양육·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·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·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.

3. “어린이이용시설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

가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

나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

다.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

라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원

마.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복지시설

바. 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3제2항의 적용을 받는 시설·장소 중 대규모점포, 유원시설, 전문체육시설, 공연장, 박물관 및 미술관

사. 그 밖에 영업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
4. “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”란 어린이이용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.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임을 지며,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또는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,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에 따라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7조(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.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어린이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

2. 관계 부처별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

3. 관련 기초조사 및 연구계획

4.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

5. 어린이안전에 관한 기반조성,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어린이안전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
③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한다.

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·분석을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.
- ⑤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·점검·제출·보고, 시행 결과의 제출·보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